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36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권향엽·주철현·박희승

이기헌 • 임미애 • 정진욱

박지원 • 이광희 • 민형배

문금주 • 민병덕 • 윤준병

박용갑・김기표・정동영

소병훈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해, 공공기록물과 국무 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주요"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 등 주요"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본문 중 "국가적으로"를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민국헌
법」에 따른 국무회의 등 주요
<u>,</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①
제17조제
2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u>.</u>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	
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